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 KODEX China H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관리기간: 2011.10.09 - 2012.10.08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골드만삭스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2.06.29	제12조(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1년간으로 한다. 다만, 2012년 10월 8일 경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1년간으로 한다. 다만, 2012년 10월 8일 경과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2012년 10월 8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간 : 2012년 10월 9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매1년간

2012.06.29	제38조(투자신탁보수)	<p>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 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단,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을 제외하며, 이하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p> <p>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 지급기준일까지</p>	<p>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단, 회계기간 종료일을 제외하며, 이하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p> <p>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도래하는 매분배금 지급기준일까지</p>
2012.06.29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p>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p> <p>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p> <p>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④ 제2 항제 10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p>	<p>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p> <p>10.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p> <p>11.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p> <p>12.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p> <p>13.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p> <p>14.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p>

		자, 해외보관 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④ 제 2 항제 12 호의 해외보관 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2.06.29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2012.06.29	말소	김남의	- KAIST 산업공학 학사 -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1 팀	2110000109
2012.06.29	신규	정승호	-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 서울대 재무학 석사 - SK 텔레콤 재무관리실 회계팀 -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2 팀	2110000108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RESTRICTED - PUBLIC_HSS FS SEL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220 만 원	서면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통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